

2024 교육활동 보호!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

모든 아이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가꿔나가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주인공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통한 학습권 보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학생·교원·학부모 모두가 상호 존중과 신뢰로 거듭나야 합니다. 학교는 선생님의 사랑과 보살핌, 학부모의 존중과 지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 새롭게 달라지는 교육활동 보호 제도

1.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대상에서 제외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생님의 직위해제 처분 금지
-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로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

2.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

- 악성민원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포함
 - ※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 제기하거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도 악성 민원에 포함
- 교직원 개인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대응(학교민원대응팀 구성)
- 아래에 해당하는 민원의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 가능

- 교직원 개인의 휴대전화 또는 SNS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 교직원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및 위법·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 합리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 교직원이 민원인과 면담이 필요한 경우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행정실장)에게 동석 요청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학교관리자는 이에 응해야 함

3. 피해교원 적극 보호

- 교육활동 침해 축소 은폐 금지
-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확대(공무방해, 업무방해, 무고 및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를 침해 행위로 추가)

4.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안 처리

-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가해학생과 분리(최대 7일의 범위에서 실시)
- 교육활동 침해행위(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포함)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동·서부 교육지원청) 개최 및 사안 처리**
- 「교원지위법」 제26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조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5조에 따라 특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 가능

□ 학부모 의견 제시

1. 의견 제시 및 정보 제공 요청

-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교육기본법 제13조제2항)
- 자녀 등 피보호자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짐(교육기본법 제23조의3)
-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학칙의 제 개정시 의견 제(초·중·고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4항)

2. 상담 요청 및 이의 제기

- 상담(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0조)
-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음.
-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함.(단, 진로 전담교사 또는 전문 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간의 상담은 예외로 함.
-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함.
- 이의 제기(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7조):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함.(단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음.